

# OCEANS 2012

# MTS/IEEE YEOSU



May 21(Mon.)~24(Tue.), 2012 The Ocean Resort, YEOSU, Republic of Korea

## OCEANS'12 MTS/IEEE Yeosu

### 참가사 물류 통관·운송 가이드라인



*“The Living Ocean and Coast – Diversity of Resources and Sustainable Activities”*

### *Co-Sponsored by*

- Marine Technology Society (MTS)
- IEEE Oceanic Engineering Society (IEEE O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KAOSTS)



## Introduction

OCEANS'12 MTS/IEEE Yeosu 한국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국내외 참가사의 모든 전시회 물자에 대한 통관, 검역, 운송, 보관, 전시회장 현장 화물취급과 사후관리에 있어 안전과 업무효율을 기하고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국세관 등 연계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정 물류서비스 공급업체 2개사를 지정하는 등 전시회 물류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OCEANS'12 MTS/IEEE Yeosu 관련 모든 국내외 참가사들에게 적용될 물자의 통관, 운송 및 전시회장 내 반입/반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본 안내서를 접수하는 모든 국내외 참가사는 본 안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전시회 지정 물류서비스 공급업체

1. 지정 물류서비스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업무적 배타권을 가집니다.

해외보세/수입 화물의 통관, 검역, 운송업무, 전시회장내 반입/반출작업, 포장 해포와 재포장, 공상자 수거, 보관 및 재반입, 작업인력, 지게차 및 크레인 등의 하역장비 제공

2. 전시물품의 물류진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정 물류서비스 공급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대한통운 주식회사 (Korea Express Co.,Ltd)	대리 박덕환	전화: 010-4650-3622 팩스: 0505-720-2012 e-mail: oceans12yeosu@gmail.com

## II. 물류 요금

### 1. 물류 요금 개요

전시회 조직위는 효율적인 물자 관리 및 안전을 위해 지정 물류서비스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1,2의 엑스포 물류창고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바, 박람회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는 지정 물류서비스 공급업체의 엑스포물류창고에 입고, 검사 후 박람회장으로 반입될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국가의 물품을 전시회장으로 반입/반출시 지정 물류서비스 공급업체에 의해 관리되며 그 요금기준과 요금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체적/중량 환산 기준

- (1) 해상, 항공 화물 모두 중량톤(W ton)과 체적톤(M ton/CBM/m<sup>3</sup>) 중 큰 쪽이 적용됩니다.
- (2) IATA기준에 따라 항공물품은 167KG = 1cbm으로 적용합니다.
- (3) 해상 화물의 경우 LCL (Loss Container Load)화물은 B/L에 표기된 SIZE 또는 CBM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며, 20'F Container 또는 40'F Contanier 화물은 각각 Min, 20cbm, Min. 40cbm 이상이 적용됩니다.
- (4) 표 1의 중량 기준 미만의 화물을 적재하여 한국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분	체적 및 중량 환산
항공운송	1cbm/m <sup>3</sup> 을 167kg으로 환산
20'F CNTR	min. 20cbm 적용, 18Ton ~ 20Ton 이하
40'F CNTR	min. 40cbm 적용, 21Ton ~ 22Ton 이하
40'F High Cubic	min. 45cbm 적용, 23~24Ton 이하

[표1] 항공/해상 운송 체적 환산표/중량표

- (5) 전시회 참가사가 반입되는 해상 운송 물자의 실제 m<sup>3</sup>수치(치수)를 선하증권(B/L)에 명시하시고, 선하증권(B/L)에 명시한 실제 m<sup>3</sup>수치(치수)로 계산 기준을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만일 선하증권(B/L)에 구체적인 m<sup>3</sup>수치(치수)가 명시되지 않으면, 실제 측정된 체적이 비용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3. 요금률

요금률은 해외에서 선적되는 모든 출입국 전시회 물자 그리고 전시장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국내물자 포함)의 비용 계산에 적용됩니다.

- (1) 기본운임 : 기본운임이라 함은 엑스포 물류창고에서 하역부터 검사소를 거쳐 전시장 부스까지의 이동, 해포, 1차 설치까지의 운임을 의미하며, 전시회 종료 후 반출시 동일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구분	단가	서비스 내역
Basic Service Charges	US\$225.00/ cbm	엑스포물류창고 하역,보관,상차, 전시장까지 운송(20Km), 전시장내 상하차, 부스까지 이동, 설치

**[표2] 기본 서비스 운임**

※ 주의 : 기본 서비스 운임은 표2의 근거에 따라 산출되었으며, 엑스포 물류창고에서 부스 반입까지 지정 물류서비스 공급업체에 의해 일괄 진행되기 때문에 선택적 요금이 아니며 Min 1cbm의 운임이 적용됩니다.

- (2) 통관 비용 : 엑스포물류 창고에서 전시품에 대한 전시반입 통관과 소모품에 대한 수입통관료가 발생하며, 세관에서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파출검사로 발생합니다. 이는 세관원의 입회하에 서류와 실제물품을 대조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구분	단가	서비스 내역
통관수수료	min. US\$50.00/ B/L건당	CIF Value 0.2% 적용
파출검사로	US\$95.00/ B/L건당	세관원 출장

**[표3] 통관수수료 및 파출검사로**

※ 주의 : 전시회 종료 후 반송품과 소모품을 하나의 B/L에 혼적을 금지하고, 혼적 시 B/L은 자동 분할되어 수입통관수수료 및 관세, 부가세 별도 발생합니다.

- (3) 행정수수료 : 참가사에서 제공할 서류(송장, 포장 명세서 등)의 번역 및 발급에 따른 대행수수료입니다.

구분	단가	서비스 내역
행정수수료	US\$95.00/ B/L건당	서류 번역, 발급 포함 제반비용

**[표4] 행정수수료**

- (4) 선택요금 : 선택요금은 포장해체 및 공상자 보관비용 등 (1)기본운임에 의한 반

입 작업 완료 후 추가적인 인원, 장비 요청시 발생하는 요금입니다.

구 분	단 가	서비스 내역
포 장 해 체	US\$45.00/cbm	우드박스해체
공 상 자 비 용	US\$45.00/cbm	공상자 수거, 보관, 재반입
엑스포 창고료	US\$70.00/cbm/Month	엑스포물류창고 보관
작 업 인 원	US\$40.00/ Hour	작업인원
3Ton 지게차	US\$50.00/ Hour	운전사 1인 포함

### [표5] 선택요금

※ 주의 : 공상자 스티커를 수령하여 공상자의 양면에 부착하고 지정 물류서비스 공급업체와 공상자의 수량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Min. 1cbm의 비용이 적용됩니다. 공상자 안에 임의로 보관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으며, 별도 보관물품에 대한 가격은 엑스포물류 창고 보관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력 및 장비 서비스 예약은 반드시 24시간 전에 해야 합니다.

(5) 할 증 : 선택요금 중 인원,장비 항목의 경우 가산금이 붙습니다.

- 가. 토·일요일, 공휴일 : 50%
- 나. 야간작업(18:00 ~ 22:00) : 50%
- 다. 심야 작업(22:00 ~ 08:00) : 100%
- 라. 화물반입기한초과 : 30%
- 마. 위험물 또는 냉장냉동 반입차량 이용 시 : 30%

(6) 국제택배를 이용한 서류 또는 소량화물에 대한 요금

- 가. 국제택배를 이용한 서류 또는 소량화물 등, 간이통관 완료 후에 반입되는 10kg 이하 소량화물에 대해 엑스포물류창고에서 전시장 부스까지 기본운임비의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 나. 관세, 부가세 착불 대납시 10%(min. US\$10.00) 할증 청구 됩니다.
- 다. HAND-CARRY 화물에 대한 세관, 검역당국에서의 통관 및 압류에 대해서 운송사는 책임이 없으며, 그 통관과 비용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7) 대형화물 및 중량초과 화물에 대한 할증

전시장에 바닥하중 제한이 있어, 평방미터/m<sup>2</sup> 당 중량초과인 경우와 전시품의 포장 전 사이즈/가로x세로x높이가 일정규모 이상인 대형화물의 경우 반입 및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선적 전 반드시 지정 물류서비스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반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별도의 장비, 공정이나 전문가 투입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추후 반입기준에 대해 내용이 업데이트 됩니다.



### (8) 물품의 기증, 판매, 폐기의 경우

가. 전시회 종료 후 참가사, 또는 제 3국으로 반출되지 않고, 대한민국 내에 기증, 판매되는 화물은 엑스포물류창고로 재 반출되어야 하며, 별도 수입통관 후 기증, 판매될 수 있으며, 이때 관세,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나. 전시회장에서의 물품 폐기는 불가하며, 폐기를 위한 물품 역시 엑스포물류창고로 재 반출되어야 하며, 관세, 부가세는 폐기물에 대한 잔존가치를 확인하여 면제될 수 있으나, 별도의 폐기비용이 발생합니다. 폐기비용은 지정 물류서비스 공급 업체와 별도 협의해야 합니다.

※ 비고 :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관세율 (관세 8%, 부가세 10%)

### (9) 기타 제시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가. 각 항만, 공항에서 엑스포물류 창고까지의 운송비

나. 세관관련 및 보험관련비용 : 수입통관료, 검역 검사비, 관세, 부가세, 출발지에서 도착항까지의 운송보험료

다. 해상운송 컨테이너 화물 : B/L fee, D/O fee, EDI 전송료, Baf/Caf, THC, 항구사용비, 컨테이너 반납 수수료, 공컨테이너 청소비, 컨테이너 정체/정류/지체료

라. 해상운송 LCL 화물 : D/O fee, EDI 전송료, THC, CFS 창고료

마. 항공운송 화물 : 항공사 EDI비용, 공항보세 창고료

## 4. 비용 지불 기한

(1) 물자반입 : 관련비용은 화물설치 5일전까지 지정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2) 물자반송 : 관련비용은 화물이 엑스포물류창고를 떠나기 전까지 지정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3) 비용은 지불일의 해당주초 US\$ 전신환 매도율로 원화 계산됩니다.

(4) 지정계좌는 추후 공지 합니다.

(5) 해상과 항공 운송비를 착불한 화물은 엑스포물류센터에 반입이 불가합니다.

## 5. 기타

(1) 상기 비용내역에는 화물 보험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반드시 각 참가자는 '운송인 면책조항(waiver of subrogation clause to carrier)'이 포함된 전 위험담보(All Risk) 조건이나 전시기간의 위험을 포함하는 박물관조건(Museums and Cultural Institutions policy Form)으로 출발 국에서 보험에 부보 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지정 물류서비스 공급업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를 미제출시에는 주최 측과 현장지정 물류서비스 공급업체의 화물에 대한 책임은 면제됩니다.

(2) 시장가격의 극심한 변동으로 상기 물류서비스 비용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Ⅲ. 선적 안내

#### 1. 해외화물의 국내 도착일

- (1) 전시회 각 참가사는 회장 내 물품 예정반입(설치)일을 지정 물류서비스 공급업체에 통보하고, 참가사의 책임 하에 해당 항만·공항에 해상화물은 반입일 기준 10일 전, 항공화물은 그 7일 전까지 도착시켜야 하며, 이때 도착한 모든 물품은 최소 반입 5일 전까지 엑스포물류창고에 입고되어 검수되어야 합니다.
- (2) 도착항
  - 가. 해상화물 : 부산항, 광양항 및 인천항
  - 나. 항공화물 : 인천공항
- (3) 도착일
  - 가. 해상화물 : 전시회장 설치 예정일 10일전
  - 나. 항공화물 : 전시회장 설치 예정일 7일전

#### 2. 선적서류 제출

- (1) 선적서류
  - 가. 해상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송장(AWB) ...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
  - 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
  - 다.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
- (2) 선적서류 제출일
  - 가. 해상화물 : 화물도착 5일전
  - 나. 항공화물 : 화물도착 3일전

#### 3. 수하인 지정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전시회물품의 선임, 항공임 지불방법은 "Freight Prepaid" 이며 물자의 수하인은 아래와 같이 지정되어야 합니다.(개인화물, 국제택배 동일)

- (1) 수하인 (Consign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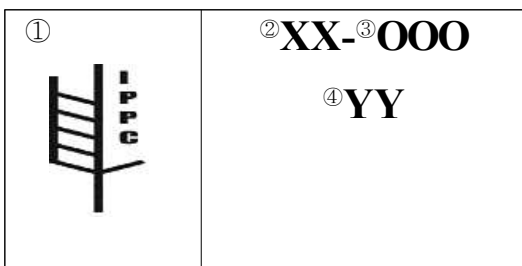
**OCEANS'12 MTS/IEEE YEOSU**  
참가자 : \_\_\_\_\_  
C/O 지정 물류서비스 공급업체
- (2) 통지처 (Notify)

지정 물류서비스 공급업체
- (3) 항공송장 및 선하증권의 Description란에 **"Exhibition goods for OCEANS'12 MTS/IEEE YEOSU"**라고 표기 되어야 합니다.

### 4. 화물의 포장 및 포장외부 표기사항

- (1)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화물은 견고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되어 국내외에서의 하차, 상차 및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시회종료 후 반송을 위하여 포장재를 조립, 해체가 용이한 재활용 포장을 활용하여야 하며, 현장지정 물류서비스 공급업체는 포장이 되지 않은 화물의 파손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2) 특히 장기간의 해상운송 중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녹슴 방지를 위한 진공포장 및 적합한 포장으로 전시회 참가사 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스스로 하여야 합니다.
- (3) 전시관 출입구 이상의 규격이거나, 초중량물일 경우 반드시 현장지정 물류 서비스 공급업체와 협의 후 포장 또는 선적하시기 바랍니다.
- (4) 중량물 또는 대형화물, 취급주의 화물의 경우 박스 윗면·앞면·뒷면·손잡이 부분을 포장 박스 외부에 상세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또한 화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목재를 통하여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는 다음과 같이 목재 포장재 검역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소독처리마크(IPPC)가 미표기된 목재포장재의 사용으로 인한 통관지체 등 제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목재 포장재의 소독처리마크 ]



- ① IPPC 마크, ② 국가 ISO 코드
  - ③ 소독처리업체 고유번호 ④ 소독처리방법
- ※ 국제기준 **ISPM No.15의 소독처리마크이며**, 국가마다 모양이 조금씩은 다르나, ①~④ 항목은 반드시 마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6) 박람회 참가사는 모든 물품 외부 포장의 최소 두 면에 다음과 같이 선명한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OCEANS'12 MTS/IEEE YEOSU</li> <li><input type="checkbox"/> Official Participant name</li> <li><input type="checkbox"/> Pavilion Name</li> <li><input type="checkbox"/> Gross Weight : ( Kg )</li> <li><input type="checkbox"/> Net Weight :( Kg )</li> <li><input type="checkbox"/> Dimension:            (L) x        (W) x        (H)Cm</li> <li><input type="checkbox"/> " Exhibition goods for OCEANS'12 MTS/IEEE YEOSU "</li> </ul>
--



### 5.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와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의 내용

- (1)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는 각 포장단위의 사이즈, 무게 및 내용물이 명확히 기재 되어야 하며,
- (2)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상의 금액은 반드시 CIF Value로 명시 되어야 하고, 박람회 후 반송품목, 소모품과 멸각품목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 6. 기본 면세 적용

- (1) 카다로그, 브로셔, 홍보책자, 포스터 및 참가사의 제품사진 판넬 등
- (2) 무료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기념품(배지 및 볼펜 등)으로서 금액이 단위품목 당USD5.00 이하

### 7. 기타 특수화물

- (1)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등 검역대상화물은 통관 시 절차와 필요서류가 복잡하니 이러한 물품을 선적하고자 하는 참가사는 반드시 선적 전에 현장지정 물류서비스 공급업체와 협의 후 선적이 요구됩니다.
- (2) 전시회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화물은 통관 시 관세 및 부가세 등 제세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반드시 선적 전에 현장지정 물류서비스 공급업체와 협의 후 선적이 요구됩니다.

### 8. 보험

각 참가자는 반드시 '운송인 면책조항(waiver of subrogation clause to carrier)'이 포함된 전 위험담보(All Risk) 조건이나 전시기간의 위험을 포함하는 박물관조건 (Museums and Cultural Institutions policy Form)으로 출발 국에서 보험에 부보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현장지정 물류서비스 공급업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를 미제출시에는 주 최 측과 현장지정 물류서비스 공급업체의 화물에 대한 책임은 면제됩니다.

Contact Point

대한통운 주식회사 (Korea Express Co., Ltd.)

박덕환 대리

Tel. 010-4650-3622 Fax. 0505-720-2012 Email. oceans12yeosu@gmail.com